

응급구조사의 자격과 면허에 대한 소고

A Legal Consideration of License and Certified Qualification of Paramedics

강선주*

I. 서 론

1. 연구의 목적

대학 교육과정에서 응급구조사를 배출한지 올해로 15년이 된다. 응급구조사는 응급의료센터, 소방서 구급대원, 마사회, 공항, 리조트, 연구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학위과정으로는 전문응급구조학 석사 학위과정이 4개 대학 이상 개설되어 있고 박사과정이 곧 개설될 시점에 있다. 이처럼 1995년 2년제 응급구조과가 신입생을 처음 받은 이래로 2005년 4년제 대학 교육과정으로 발돋움하여 현재는 1급 응급구조사 배출 교육기관이 총 36개(4년제 15개교, 3년제 21개교)¹⁾ 증가하였고 연간 약 1,500여 명의 1급 응급구조사가 배출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국가적 인적자원개발이라는 틀 속에서 교육훈련정책과 자격제도가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각 부처의 필요에 의해 실시되어 왔다. 1997년 「자격기본법」²⁾ 제정되었다고는 하나 국가적 수준에서 일관된 자격체계를 제시한 것은 아니어서 일-교육훈련-자격의 연계, 자격간의 연계, 자격-학력간의 연계 등이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다. 응급구조사는 개별법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1급, 2급 자격으로 구분한다. 자격과 관련한 법률로 「자격기본법」이 있는데, 이 법은 자격에 관한 기본 사항을 정하여 자격제도의 관리·운영을 체계화함으로써 능력중심사회 구현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제정되었다. 이 법은 법령에 따라 국가가 신설하여 관리·운영하는 ‘국가자격’과 국가 외의 자가 신설하여 관리·운영하는 ‘민간자격’을 포함하고 있다. 운영 주체에 따라 국가자격과 민간자격으로 구분하게 되는데, 전자는 「국가기술자격법」³⁾에 의한 국가기술자격과 「개별 법령」에 따르는 국가자격이 있다. 그러나 이 법에 의한 자격의 정의는 다른 나라의 경우처럼 자격이 교육훈련과정과 연계되어 학위 등 일반자격과 특정직업능력을 나타내는 직업전문자격 모두를 포괄하지 않고, 오로지 직업과 관련된 전문직업자격을 의미하는 한계가⁴⁾ 있다.

한편 보건의료인력은 주로 보건복지부의 행정입법에 의해서 자격과 면허제도를 관리하고 있다. 자격·면허증 취득자의 직업능력과 노동에 관한 연구 등에 의하면 면허(licensure)제도를 자격인증(certification) 제도로 대체하는 방안과 관련하여 면허제도의 장점이 공급자가 초과이윤을 누릴 수 있다는 것과 효과적인 제재 장치가 면허의 취소·정지라는 것에 국한된다는 이유로 다양한 논의가 있다⁵⁻⁷⁾. 또한 국가기술자격을 중심으로 자격·면허증 취득자의 활용 법령에 대한 연구 등이⁸⁾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보건의료인력 전반의 면허와 자

* 경동대학교 응급구조학과

투고일(2011. 7. 16), 심사완료일(2011. 8. 1), 게재확정일(2011. 8. 8)

교신저자: 강선주(E-mail: ksj5139@k1.ac.kr)

격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는 많이 진행되지 않은 실정이다. 그러나 응급구조사의 면허와 자격에 대하여 연구한 논문은 찾아볼 수 없었다.

실무적으로 응급구조사가 소방공무원이 되기 위해서는 예외적으로 경력을 요구하지 않는 중앙 공채 지원을 제외하고는 응급실 실무 경력 2년을 요구하고 있어 졸업생의 대다수가 의료기관에 취업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보건의료관련학과를 졸업한 자 가운데 환자 진료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인력은 간호사와 응급구조사라고 할 수 있다. 간호사는 「의료법」에 의해 대학 이상의 교육을 이수하고 국가시험을 통과하면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보건복지부로부터 간호사 ‘면허’를 받게 된다. 이에 반하여 응급구조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학력요건과 시험요건이 충족되고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1급 응급구조사 ‘자격’을 받는다. 뿐만 아니라 2급 응급구조사의 경우는 단기간의 양성교육을 통해 자격을 받고 난 후 현장에서 3년 이상의 실무 경력이 쌓이면 전공과 학력요건 없이도 1급 응급구조사가 되기 위한 국가 시험 응시자격이 부여된다(이 법 제36조 제2항 제3호). 그러나 실무 경력이 학력요건을 대체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제고할 필요가 있으며 다른 보건의료인력 정책과의 형평성 문제를 일으킨다.

이에 본 연구는 면허와 자격의 법적 개념을 규명하고 특히 국가자격의 관리체계 속에서 응급구조사 자격인정요건이 다른 보건의료인력과 어떠한 차이가 존재하는지와 그로 인한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범위

이 연구에서 학력요건이란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전공학문 등을 요구하는 조건을 의미하고 자격요건이란 학력요건에 해당하는 졸업예정자에게 국가시험과 결격사유 존부의 조건을 부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연구의 범위는 개별 법령에서 대학졸업 이상의

학력을 요구하는 국가자격으로서 통계청의 표준직업분류상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에 포함되는 면허(자격)가운데에서 1급 응급구조사와 학력요건과 자격요건 측면에서 비교 대상이 될 수 있는 보건의료인력으로 한정하여 관련 법령의 연혁을 분석한다. 그러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은 개인의 직무수행능력 평가를 목적으로 직업 활동의 범위 제한이 없이 직업능력을 인정해 주는 것이므로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II. 본 론

현행 보건의료법률 중에서 「의료법」, 「의료기사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생사에 관한 법률」 등은 의료인·의료기사·응급구조사·위생사 등의 면허(자격)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실무적으로 의료관련 면허(자격)는 면허교부신청서와 함께 필요한 서류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제출하게 되지만 면허(자격)의 심사와 등록 등 면허(자격)인증기관은 보건복지부이다. 이하에서는 보건의료인의 면허와 자격의 법적 개념과 실태를 고찰하고 응급구조사와 상이한 점을 위주로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1. 면허와 자격의 법적 개념과 유형

(1) 면허의 법적 개념

일반적으로 면허와 자격은 공적으로 증명(public certification)해 주는 기능이 있다. 면허(license)의 사전적 의미는 ‘일반인에게 허가되지 않는 특수한 행위를 특정한 사람에게만 허가하는 행정처분’이라고⁹⁾ 정의한다. 행정법상의 개념으로는 명령적 행정행위의 하나인 ‘허가’에 해당하는데, 허가란 법규에 의한 일반적인 상대적 금지를 특정한 경우에 해제하여 적법하게 일정한 사실행위 또는 법률행위를 할 수 있게 해 주는 행위를 의미한다¹⁰⁾. 법령상으로 허가·면허·승인 등 다양한 용어로 사용되므

로 각 행위의 학문상 허가에 해당 여부는 관계법령의 규정 취지에 따라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허가의 대상인 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는 헌법상 자유권에 해당하는 것인데, 구체적인 공익목적 예를 들면 특정한 행위가 국민의 생명, 건강, 질서, 안전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개별법에서 별도로 그 행사에 일정한 제한을 가하는 것이다. 허가절차는 자유권의 행사가 공익목적상 부과된 관계법의 제한규정에 배치되는지 여부를 소관부처가 사전에 심사하는 것이다.

(2) 자격의 법적 개념

자격(qualification)의 사전적 의미는 일정한 신분이나 지위를 가지거나 일정한 일을 하는데 필요한 조건이나 능력⁹⁾ 또는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평가·인정된 자질이나 숙련의 정도라 할 수 있고 어떤 직무에서 현재 또는 미래의 근로자가 특정한 수준의 숙련이나 자질을 갖추었음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이다⁴⁾.

「자격기본법」 제2조 제1호는 자격을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소양 등의 습득정도가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평가 또는 인정된 것을 의미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3) 면허와 자격의 유형

개별법상 국가자격은 주로 전문서비스 분야의 자격들이고 발급자, 검정기관(검정시행 또는 위탁시행), 자격등급체계 및 합격기준 등의 기준이 상이하게 운영되고 있다⁵⁾. 한편 전문가자격의 경우에 면허는 아니지만 법률을 통해서 해당 직무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자격을 부여받게 되는 경우에는 독점적인 직업행위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면허적 성격이 강하여 면허의 범주에 포함시키는 경우도 있다⁷⁾. 예를 들면 의사가 면허를 받은 후 전문분야 자격 취득 요건에 해당하면 ‘전문직’이라 하는데 이러한 경우에 의사면허와 전문직 자격을 모두 갖게 되고 요양기관을 개설할 때 전문 과목을 표시할 수 있으므로¹¹⁾

면허적 성격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자격증이 해당 업종을 개업하는데 필수적인 경우를 ‘면허형자격’이라 하고 해당 업종을 운영하는 기업에게 일정 수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를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는 효과를 나타내는 경우에는 ‘고용의무형자격’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이와 달리 자격이 없다고 하여도 해당 업무에 종사할 수 있으며 고용이 의무화되어 있는 것이 아닌 자격을 ‘능력인정형자격’이라 한다⁶⁾.

위와 같은 분류에 의하면 현행 법령상 의사·간호사는 학력요건과 자격요건을 충족하면 면허를 부여하지만, 의사는 해당 업종의 개업과 관련된 ‘면허형자격’이고 간호사는 비록 명칭은 간호사이지만 ‘고용의무형자격’이라 할 수 있다. 응급구조사의 경우에도 단독으로 해당 업종을 개업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응급구조사 자격이 없어도 해당 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고용이 의무화되어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고용의무형자격’으로 분류할 수 있다.

2. 면허와 자격 부여 실태

(1) 표준직업분류

통계청의 한국표준직업분류(KSCO: Korean Standard Classification of Occupations)는¹²⁾ 경제활동을 위해 개인이 하고 있는 일을 그 수행되는 일의 형태에 따라 유형화한 것으로 ILO의 국제표준직업분류(ISCO: International Standard Classification of Occupations)에 기초하여 제정되었다.

이 분류에 따르면 대부분인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가운데 중분류인 ‘보건사회복지관련직’으로 분류되어 있다(그림 1 참조). 의료진료전문가는 의사이고 세분류에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이 포함된다.

표준직업분류	
▣	1. 관리자
▣	2.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	21. 과학 전문가 및 관련직
▣	22. 정보통신 전문가 및 기술직
▣	23. 공학 전문가 및 기술직
▣	24. 보건사회복지 및 종교관련직
▣	241. 의료진료 전문가
▣	242. 약사 및 한약사
▣	243. 간호사
▣	244. 영양사
▣	245. 치료사 및 의료기사
▣	246. 보건의료관련 종사자
▣	247. 사회복지관련 종사자
▣	248. 종교관련 종사자

〈그림 1〉 보건사회복지 및 종교관련직(중분류)

간호사는 세세분류로 ‘전문간호사, 일반간호사, 보건교사, 조산사’가 포함되는데, 한 가지 특이한 것은 유의사항에 간호조무사와 혼동하지 않도록 ‘학력요건과 자격요건’에 유의하라는 점을 명시하고 있는 것이다.

치료사 및 의료기사의 세분류로는 임상병리사·방사선사·치과기사·치과위생사·의지보조기기사·물리 및 작업 치료사·임상심리사 및 기타치료사가 속한다.

(2) 면허의 부여

의료진료전문가, 약사 및 한약사, 간호사, 치료사 및 의료기사는 각각의 개별법인 「의료법」, 「약사법」,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등에서 학력요건과 자격요건을 구비하면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면허를 받는다.

1) 의료인

의료인의 경우에 1951년 제정된 「국민의료법」¹³⁾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각 의료업자의 학력요건과 자격요건에 부합하는 자에게 면허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특히 의사면허제도는 1900년 1월 2일자로 반포된 의사규칙에서 일찍이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다¹⁴⁾.

2) 의료기사등

의료기사등의 면허에 관하여는 「의료기사법」¹⁵⁾ 제정 당시부터 의사·치과의사의 지시 및 감독하에 진료 또는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의료기사(종별로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사 및 치과위생사)에게 학력요건과 자격요건 및 결격사유 해당여부 절차를 거쳐서 면허를 부여하도록 정하였다. 이후 의무기록사 면허제도가 1982년에 반영되었고 안경사 면허제도는 1987년 개정법률(법률 제3949호, 1987.11.28)부터 「의료기사법」에 포함되었다.

3) 위생사

위생사는 환경위생사·식품위생사·위생시험사(이하 “위생사 등”이라 함)의 등급을 1급부터 3급까지 구분하여 개별법 제정 당시부터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현행 「위생사에 관한 법률」¹⁶⁾ 제3조 제1항 제1호는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보건 또는 위생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동조동항제2호는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위생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자, 동조동항제3호는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위생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등에게 위생사국가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특이한 것은 고졸이상의 학력자가 3급 위생사 자격을 갖고 위생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하면 전문대학 과정의 학력요건을 대체시켜 준다는 것이다. 즉 3년의 실무 경력이 전문대학의 교육기간을 상쇄할 정도의 영향력이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위생사등에관한법률」¹⁷⁾ 제정 당시에는 1급 위생사는 2급 위생사 면허를 받고 위생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하면

별도의 국가시험 없이 보건사회부장관의 면허를 부여하도록 한 것이 현재는 1급 위생사도 반드시 국가시험을 거치도록 변경되었다.

(3) 자격의 부여

표준직업분류에 속한 보건의료인력 가운데 개별법에서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는 드물다. 행정법상 허가가 보건의료관련법령에서는 국민의 생명, 건강, 안전등에 밀접하게 관련되므로 자격으로 표현되는데 그 예는 아래와 같다.

1) 안마사

안마사의 자격에 관하여는 「접골사·침사·구사·안마사자격시험규정」에¹⁸⁾ 초등학교 이상의 학력요건을 구비한 자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양성기관에서 안마술에 관하여 3년 이상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자에게 안마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자격시험 합격자에게 서울특별시장 또는 도지사가 합격증을 교부한다. 안마사에게 자격을 부여한 것은 1960년 11월 28일 보건사회부령 제 56호로 자격시험규정을 제정 공포한 때부터이다.

2) 간호조무사

간호조무사의 경우에는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¹⁹⁾ 제4조에 자격시험 응시자격으로 고등학교 졸업자 수준의 학력과 간호조무사양성소에서 일정 시간 이상 학과교육과 실습을 이수한 자에게 자격시험을 거쳐서 시·도지사가 자격증을 발급하게 된다. 연혁적으로는 1973년 「간호보조원·의료유사업자및안마사에관한규칙」 제정 당시부터 간호보조원 자격을 부여하였다.

(4) 검토

이상에서 응급구조사를 제외한 보건의료인력의 면허와 자격에 대한 법규정을 살펴보았다. 의료인과 의료기사의 경우에는 「학력요건과 자격요건」을 충족하면 면허를 부여하는 것이 개별법에서 확인할 수 있는 공통된 사항이었다. 그리고 의료기사는 아니지만 안경사와 의무기록사도 현행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에서 면허부여 요건을 의료기사와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다.

특히 위생사는 면허를 부여하면서도 실무 경력만으로 「전공과 학력요건의 대체를 인정」하는 범위가 매우 포괄적이었다. 1급 위생사가 되기 위해서는 전문대학 수준의 보건 또는 위생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라는 「전공과 학력요건」이 필요한데, 그 대체 범위를 살펴보면 첫째 보건 또는 위생관련과 관련이 없더라도 전문대학 졸업자로서 1년 이상 위생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둘째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3년 이상 위생업무에 종사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전공과 학력요건을 실무 경력으로 대체할 수 있게 허용하는 이유는 직접적으로 환자 진료와 무관하고 간호사의 업무 일부나 의료기사의 업무처럼 의사의 지시·감독이 필요없기 때문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한편 간호조무사는 고졸이상의 학력요건과 일정기간의 교육이수를 요건으로 자격시험을 거쳐서 자격을 부여하는데, 아무리 실무 경력이 3년 이상이 되었어도 「전공과 학력요건」을 대체하여 간호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지는 않는다.

3. 응급구조사의 경우

(1) 응급구조사의 직업분류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부분인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의 중분류 「보건·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내에서 소분류 「보건의료관련종사자」의 세분류에 「응급구조사」가 있다. 응급구조사는 위생사, 안경사, 의무기록사, 간호조무사, 안마사와 함께 보건의료관련종사자로 아래 그림 2와 같이 분류되어 있다.

응급구조사의 세세분류는 119구조대원과 구급요원으로만 분류되어 있다. 그런데 1급과 2급 응급구조사의 「전공과 학력요건」에 차이가 있음에도 간호사의 세세분류에서 간호조무사와 혼동하지 않도록 「학력요건과 자격요건」에 유의하라는 주의사항이 응급구조사의 분류에 대한 설명에서는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이처럼 통계청 표준직업분류에서 1급 응

표준직업분류	
▣1.	관리자
▣2.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21.	과학 전문가 및 관련직
▣22.	정보통신 전문가 및 기술직
▣23.	공학 전문가 및 기술직
▣24.	보건사회복지 및 종교관련직
▣241.	의료진료 전문가
▣242.	약사 및 한약사
▣243.	간호사
▣244.	영양사
▣245.	치료사 및 의료기사
▣246.	보건의료관련 종사자
▣2461.	응급구조사
▣2462.	위생사
▣2463.	안경사
▣2464.	의무기록사
▣2465.	간호조무사
▣2466.	안마사
▣247.	사회복지관련 종사자
▣248.	종교관련 종사자

〈그림 2〉 보건의료관련 종사자(세분류)

급구조사와 2급 응급구조사를 별다른 차이없이 분류한 것은 응급구조사를 선발·배치하는 일부 법규가 1급 응급구조사가 부족한 경우에는 2급으로 선발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2) 응급구조사의 자격

우리나라에서 응급의료에 관심을 기울인 것은 1979년 대한의학협회 주관으로 ‘야간응급환자 신고센터’를 운영하기 시작하면서부터이고 1990년에는 정부 주도하에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준비가 시작되었다. 특히 1991년 응급의료의 지연으로 인한 환자사고 사례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자 전국적으로 119 안전센터에 119구급대를 두어 병원

전 단계의 현장중심 응급환자처치 및 이송 등을 하기 시작했다. 동년 제정된 「응급의료관리운영규칙」은²⁰⁾ ‘간호조무사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중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응급의료센터에서 1년 이상의 수습을 마친 자’에게 응급구조사 자격을 부여하였고 응급의료센터 등과 구급차에 응급구조사를 배치하도록 규정하였는데, 시·도지사가 응급구조사 자격을 부여하는 예도 있었다.

(3) 전공과 학력요건의 대체

실제로 현행 법령에서 1급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는 침습적인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종래 2급 응급구조사가 할 수 없는 업무는 ‘현장 또는 이송’ 중 신체의 일부를 절개하거나 봉합하는 등 신체조직의 변화를 수반하는 응급처치와 의약품의 투여였는데,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령」에는 보다 구체적으로 ‘기관삽관, 정맥로 확보, 자동제세동기 이용, 약물투여 등’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처럼 법문으로도 명확히 알 수 있듯이 1급 응급구조사의 응급처치 등 의료행위는 전공과 학력요건을 충족하였기에 인정되는 것이라 할 수 있고 단지 실무 경력이 인정된다고 하여 허용될 수 있는 성질의 응급의료행위가 아니다.

1994년 1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정²¹⁾ 당시에 응급구조사의 자격인정은 ‘전문대학 이상에서 응급구조학을 전공한 자, 의료법에 의한 의료인, 보건사회부장관이 지정하는 응급구조사 양성기관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정을 이수한 자 및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응급구조사 응시자격이 있는 자’에게 시험을 거쳐서 보건사회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도록 하였다. 그리고 의료인에게 응급구조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은 2000년 법률 전면개정 당시에 삭제되었는데, 2급 응급구조사의 실무 경력으로 1급 응급구조사가 될 수 있는 전공과 학력요건을 대체할 수 있도록 허용한 내용은 법률 제정 이후 수차례의 법개정도 불구하고 현재 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4) 검토

이상의 내용을 살펴보면, 응급구조사는 1991년부터 간호조무사의 자격을 구비한 자에게 1년 동안 응급실 실무수습을 거쳐서 응급환자 발생 현장에 응급구조인력으로 공급하려는 정책적인 필요에 의해서 배출되었다. 그러나 15년의 시간이 경과한 지금은 대학과정의 교육기간이 종전의 두 배로 증가할 정도로 응급구조학의 학문적 발전을 이루었다. 따라서 1급 응급구조사가 되기 위해서는 대학교육과정에서 이론과 술기교육 및 임상실습을 통해서 충분히 취득하여야만 1급 응급구조사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이 인정된다.

응급구조과가 대학과정으로 처음 운영된 1995년에는 2년의 교육과정을 거쳐야 했다. 2년의 교육기간은 1991년부터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지닌 자에게 1년의 실무수습을 거쳐 응급구조사 자격을 부여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 간호조무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현재까지 약 1년 정도 사설학원 등에서 교육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응급구조과 신설 초기는 이러한 배경을 토대로 간호조무사 자격 취득을 위한 1년과 응급실분야 경험 1년을 고려하여 2년의 교육기간으로 정해졌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는 3~4년의 대학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하므로, 2급 응급구조사의 실무 경력만으로 종전처럼 1급 응급구조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전공과 학력요건을 계속 대체할 수 있게 인정할 필요성이 있는지 의문이 든다. 왜냐하면 면허(자격)제도는 학위과정 등 교육훈련과정과 직업능력자격인정 양 측면에서 제고해야 하기 때문이다.

2급 응급구조사의 3년 이상 실무 경력을 '전문직으로서 1급 응급구조사가 되기 위하여 대학과정에 진학한 학생들이 투자한 시간과 등록금의 가치'와 동일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법에서도 1급과 2급 응급구조사 업무를 명확히 구분하고 있는데, 전공 학문 탐구를 통한 이론과 술기 습득이 없이, 2급 응급구조사의 실무 경력만으로 1급 자격을 응시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은 응급구조학 학문의 존재

를 흐드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보건의료인력 가운데에서 '전공과 학력요건'을 실무 경력으로 대체하고 있는 예는 오로지 '위생사의 전례'가 있을 뿐이다. 그러나 위생사는 환자를 직접 보살피는 업무와 무관하고 업무수행에 의사의 지도·감독이 필요한 것도 아니므로 그러한 예를 응급구조사에게 허용한 근거로 사용할 수 없다. 법률 제정 당시에 학력요건을 실무 경력으로 대체하도록 허용한 제도는 1991년부터 1994년까지 간호조무사로서 1년의 실무수습을 거쳐서 응급구조사가 된 자에 대하여 배려의 차원에서 '경과조치로 일정기간만 시행하였더라면 설득력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2급 응급구조사가 되기 위해서 간호조무사가 1년 이상의 실무수습을 거치는 예는 극히 드물다. 그러므로 실무경험만으로 1급 응급구조사에게 요구되는 전공과 학력요건을 대체하도록 허용한 정책은 공정성면에서 제고할 필요가 있다.

III. 결 론

보건의료관련법에서 의료인, 의료기사 등에게는 면허를 부여하고 응급구조사에게는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데 실질적인 효과 측면에서 단독으로 개업을 할 수 있는 '면허형자격'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고용의무형자격'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면허와 자격을 구분함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에서 환자를 돌보는데 있어서 국가자격으로 운영·관리하는 자격은 응급구조사를 제외하고는 '전공분야의 학위 요건을 구비'한 경우에 모두 '면허'를 부여하여 관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향후 1급 응급구조사의 자격제도 개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몇 가지 제언을 한다.

첫째, 1급 응급구조사에게 면허를 부여해야 한다.

보건의료법률에서 보건 또는 의료관련학과를 전

공한 자가 해당 국가시험을 합격한 경우에는 국민의 생명, 안전 등을 고려하여 면허를 부여한다. 이는 행정법상 허가에 해당하고 일관성있는 정책 집행면에서 정의에 부합한다. 1급 응급구조사는 응급의료현장에서 응급환자에게 전문응급처치를 실시하고 이송 중 응급처치를 수행할 뿐만 아니라, 병원 단계에서 전문 응급의료인력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므로써 국민의 생명권을 보장하고 있다. 특히 간호사, 의료기사는 의사의 지도·감독하에 진료에 관여하는데 이는 1급 응급구조사의 경우에도 예외는 아니다. 1급 응급구조사야말로 응급의학전문인의 수족과 같이 병원 전 단계의 응급현장에서부터 이송간, 그리고 병원단계의 응급의료센터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면허를 부여해야 한다.

둘째, 전공과 학력요건을 실무 경력으로 대체하는 정책은 특히 응급환자의 생명권 보장을 위해서 조속히 폐기되어야 한다.

응급구조사만 다른 보건의료인력과 달리 취급하여 국가시험 자격에서 요구하는 전공과 학력요건을 실무 경력으로 대체하는 것은 다른 보건의료인력 면허정책과 비교할 때, 일관성과 공정성에 반하고 그렇게 해야 할 타당한 이유를 찾을 수 없다. 만약 이러한 정책을 계속 유지한다면 「의료법」에도 간호조무사 자격을 가진 자가 3년 이상의 실무 경력을 구비할 경우에, 간호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야 한다. 만약 그렇게 할 수 없다면 왜 응급구조사의 경우에만 2급 응급구조사 실무 경력으로 1급 응급구조사가 되기 위한 전공과 학력요건을 대체할 수 있는지 납득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셋째, 1급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재정립해야 한다.

응급의료와 응급구조학계의 발전 정도를 반영하고 응급환자의 생명권 보장을 위해 응급구조사 고

유의 업무와 의사의 지도감독이 필요한 업무로 구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국적으로 4~3년 기간의 교과과정을 마치고 약 800시간 이상의 실습시간을 이수함에도 법적인 업무범위는 매우 한정되어 있고 2급과 별다른 차이가 없게 규정한 것은 고급인력의 적정 활용을 통하여 국가경쟁력 증진과 국민의 건강권 및 생명권 보장차원에서 비용효과적이지 못하다. 그러나 아직 학제가 일원화되지 않아 1급 응급구조사의 전문성에 대한 각계의 견해 차이가 존재하므로 다른 보건의료인력 교육기관의 학제 일원화 노력에 발맞추어 교과과정과 교육기간을 4년제로 일원화하려는 응급구조사협회와 응급구조학계의 결집된 노력이 필요하다.

넷째, 통계청 표준직업분류에 1급 응급구조사의 다양한 활동 영역이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 특히 응급구조사의 직무를 세세분류 할 수 있도록 전문응급구조분야 개발과 정착을 위해 응급구조학회와 협회가 합심하여 전력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다섯째, 1급과 2급의 명칭 사용에 대하여 차이를 둘 수 있는 방안 모색도 필요하다. 예를 들면 1급 응급구조사를 '전문응급구조사 또는 응급구조사 등' 1급 응급구조사의 역할을 잘 대변하고 2급 응급구조사와 차별화가 가능한 용어 정립이 필요하다.

끝으로 대학을 졸업한 1급 응급구조사가 소방근무를 하기 위해 2년의 임상 실무 경력을 요하는 것은 더 이상 현실성이 없다. 3~4년의 대학 교육을 통해서 충분한 이론과 술기실습 및 임상실습을 하기 때문이다. 오히려 소방인력의 수급 측면에서 응급구조(학)과 졸업 예정자를 어떻게 하면 더 많이 확보하고 집중적인 신입 직무교육과 주기적인 보수교육을 통해서 철저하게 소방인력으로 활용하는 방안 모색이 시급하다.

참고문헌

1. <http://www.emt.or.kr>. 응급구조사협회. 전국 응급구조학과 소개 및 정원 현황. 2011.
2. 자격기본법. 2010. 7. 5 법률 제10339호.
3. 국가기술자격법. 2010. 5.31 법률 제10336호.
4. 강순희, 김안국, 박성재, 김주섭, 김승택, 김덕호 등. 자격제도의 비전과 발전 방안. 한국노동연구원 연구보고서: 2003. p.211.
5. 주인중, 김덕기, 김상진, 김현수, 박종성, 이동임 등. 지식경제시대의 자격제도.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정책연구: 2008. p.18.
6. 신도철. 직업면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경제경영논집 2005:34:2:165-209.
7. 신용철. 자격과 면허의 비교연구. 한국산업인력공단 기본연구: 2002. p.44.
8. 김상호. 자격·면허증의 취득자 우대: 활용 법령과 직업규제-국가기술자격을 중심으로-. 직업교육연구 2009:28:3:45-58.
9. <http://stdwebw.korean.go.kr>.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2011.
10. 김동희. 행정법 I. 제17판. 서울:박영사: 2011. p.45.
11. 의료법. 2010. 7.23 법률 제10387호.
12. <http://kostat.go.kr>. 통계청. 한국표준직업분류.
13. 국민의료법. 1951. 9.25 법률 제221호.
14.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한국최초 면허의사 100주년 기념 특별전. 2008. p.55.
15. 의료기사법. 1973. 2.16 법률 제2534호.
16. 위생사에 관한 법률. 2010. 1.18 법률 제9932호.
17. 위생사등에관한법률. 1975.12.31 법률 제2859호.
18. 접골사·침사·구사·안마사자격시험규정. 2010. 3.19 보건복지부령 제1호.
19.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2010. 4.23 보건복지부령 제4호.
20. 응급의료관리운영규칙. 1991. 6.22 보건사회부령 제869호.
2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1994. 1. 7 법률 제 4730호.

=Abstract =

A Legal Consideration of License and Certified Qualification of Paramedics

Sun-Joo Kang*

Purpose: The aim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legal concept of a license and a qualification for health care personnel. We analyze the appropriateness of the qualification for the first-class paramedics and the sufficiency of 3-year job experience in substitution for college level academic major.

Method: We reviewed Laws on Healthcare which stipulate academic and career qualifications for healthcare personnel for whom college-level academic training and job experience to get a license.

Results: There is no legal consideration which permits major and educational background substituted by job experience. Only third-class hygienist who graduated from a high school or the equivalent with 3 year job experience can apply for first-class hygienist' national license examination without educational requirements. However, it is nothing to compare with first-class paramedics because the work of hygienist is not directly related to patients care and there is no need of doctor's supervision for hygienist' job. Paramedics have a major role in saving emergency patients in making prompt decision, applying appropriate emergency treatment, securing intravenous route, managing intubation, applying defibrillator, and etc.

Conclusion: Ministry of Health & Welfare should grant license to paramedics and annul replacement of academic major background. In addition, it is imperative to broaden the scope of paramedics' job so that they can guarantee patient's life saving in emergency situation with quality major curriculum of college level.

Key Words : Paramedics, License, Qualification, Job Experience, Academic Major

* Department of Emergency Medical Technology, Kyungdong University

Correspondence to: Sun-Joo Kang (E-mail: ksj5139@k1.ac.kr)